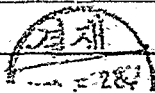


기안용지

분류기호	도행401-	(전화번호)	전결규정 조항 전결사항
처리기간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결재</div> <div style="font-size: 1.5em;">1979. 5. 28</div> <div style="font-size: 1.2em;">시정</div> <div style="font-size: 1.2em;">No 1197</div>		
시행일자			
보존년한			
보조기관	제2부 시장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봉인</div>	<div style="font-size: 1.5em;">법무담당관</div> <div style="font-size: 1.5em;">심사필</div>
	도시경비국		
	도시정리담당관		
기안책임자	박윤남	79. 5. (전봉열)	
경유	관안참조	발 79. 5. 28	<div style="font-size: 1.5em;">검별</div> <div style="font-size: 1.2em;">1979. 5. 28</div>
수신		예치제 293호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 측지기 관리및 적분규정 개정		
제1안 (내부결재)			
1. 서울특별시 예규 제370호로 제정 공포한 서울특별시 측지기 관리및 적분규정중 일부를 별첨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2. 주요 개정 내역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대금 납부시 2할 강제 제도의 폐지			
첨부	1. 개정안 요지 1부.		
	2. 개정안 1부.		
	3. 개정 대비표 1부. 끝.		
판인			
제2안	<div style="font-size: 1.5em; font-weight: bold;">4부</div>		
수신	문화정보실장	박신	도시경비국장
제목	서울특별시 측지기 관리및 적분규정 강제 의뢰		
1. 서울특별시 측지기 관리및 적분규정을 개정 하			
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개정안 1부. 끝.





1. 저미리 매매 계약 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 도지대금 납부시 2할
공제 제도의 폐지

법무장사	19. 5. 24
담당관	
계장	
취급처	

서울특별시 예주시 로

No 16

서울특별시 제비지 관리 및 처분규정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제비지 관리 및 처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4조 2항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각대금의 일시불 기간은 60일을 경과 하지 못한다. 다만, 동기간내에 대금을 납부치 못할 때에는 ~~앞서~~ ² 기간 경과일로 부터 해약시까지 연 20%의 연체 이자를 ~~납부~~ ³ 납부 하여야 하며 6개월 경과시에는 해약 조치 할 수 있다.

제74조 3항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년부로 계약한 자가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일시불로 전액 납부할 때에는 일시불 계약에 준하여 매각 대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79년 5월 31일 부터 시행 한다.

서울特別市例規章 第 号

서울特別市替費地管理及處分規程改正規程

서울特別市替費地管理及處分規程을 다음과 같이改正한다.

第14條第2項第1号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賣却代金の一時拂期間은 60日을經過하지 못한다. 다만 同期間內에 代金を納付하지 못할 때에는 그 ~~一時~~拂期間經過日로부터 解約時까지 年20%의 延滯利子를 ~~請求~~ 納付하여야 하며 6個月經過時에는 解約措置할 수 있다.

第14條第3項第3号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年賦로 契約하는者, 契約日로부터 60日內에 代金を一時拂로 全額納付할 때에는一時拂契約에 準하여 賣却代金으로 徵收할 수 있다.

附 則

이規程은 1999年5月31日부터 施行한다.

제44조 제1항 제1호 (안) 정액 (안)

문	개	정
<p>제44조 제1항 1호</p> <p>매달 매달금 입시에 납부하면 2월 공제 합수 있으며 입시비용 기간은 60입을 경과 하지 못 한다. 다만, 동 기간내에 매달금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2월 공제를 받지 못하며 입시비용 기간 경과일로 부터 해약시 까지 년20%의 연체이자 를 전부 납부 하여야 하며 6개월 경과시에는 해약되지 않을 수 있다.</p>	<p>제44조 2항 1호</p> <p>매달매달금의 입시비용 기간은 (입을 경과 하지 못한다. 다만, 동 기간내에 매달금을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입시비용 기간 경과일로 부터 해약시 까지 년20%의 연체이자 를 전부 납부 하여야 하며 6개월 경과시에는 해약 하지 않을 수 있다.</p>	<p>정액이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수요자 매달금도 2. 가수로부터의 연체 3. 원지매달금 납부 매달금 원입금의 원지매달금 납입과 입회 시.

<p>제44조 제1항 3호</p> <p>년부로 계약한 자가 계약일로 부터 60일내에 매 달금 입시비용 전액 납부 할 때에는 입시비용 계약 에 준하여 2월 공제안 규정을 매달매달금으로 정 수 할 수 있다.</p>	<p>제44조 3항 3호</p> <p>년부로 계약한 자가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입시비용 전액 납부 할 때에는 입시비용 계약에 준하 여 매달매달금으로 정수 할 수 있다.</p>	<p>상</p> <p>보</p>
-----------------------------------------------------------------------------------------------------------------------------------	---------------------------------------------------------------------------------------------------------------------	-------------------